

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

※ 뒤쪽의 구비서류와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3일
신고인	성명(법인명)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		
	주소		전화번호		
영업신고사항	영업장 명칭(상호)				
	영업의 종류			신고번호	
변경사항		변경 전		변경 후	
영업자 또는 대표자 (주민등록번호, 법인등록번호)					
영업장 명칭(상호)					
영업장	소재지				
	전화번호				
영업장 면적		㎡		㎡	
축산물운반용 차량 수					
품목 추가에 의한 시설변경		(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)		(시설개요 및 평면도 별첨)	
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변경					
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 설 치대수 및 설치장소					
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 는 규약에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의 축 산물 진열 여부					

변경 사유

「축산물 위생관리법」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1. 영업시설의 변경내역서(시설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소재지 또는 시설 변경 시 추가 제출 서류 가. 영업장의 시설내역 및 배치도 나. 시설사용계약서 사본(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식육가공품의 유형 및 가공방법 설명서(식육즉석판매가공업만 해당합니다) 4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따른 전통시장의 점포 외 영업장소에서 축산물을 진열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(식육판매업, 식용란수집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만 해당합니다) 가.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65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인회의 정관 또는 규약 나. 가목에 따른 정관 또는 규약에서 별도로 지정한 점포 외 영업장소에 설치할 축산물 진열시설 내역서	수수료 5천원 (온라인 신청 시 4천원)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1. 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2.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	

유 의 사 항

1. 영업을 휴업, 재개업 또는 폐업할 때에도 신고해야 합니다. 이 경우 「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릅니다.
2.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행정처분과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.
3. 신고인의 영업의 종류란에 축산물판매업의 경우 축산물판매업 다음에 식육판매업·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·우유류판매업·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중 해당하는 영업을 적습니다[예: 축산물판매업(식육판매업)].

처리절차

